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57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4.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23



『덕자네방앗간』

정 보 공 개 서

[덕자네방앗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덕자네방앗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62, 1층101호,102호(서초동,강남역IPARK)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599-8959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본부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전화번호 상동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덕자네방앗간] 연혁
3.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덕자네방앗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4. 최근 3년간 [덕자네방앗간] 가맹점 수
5. [덕자네방앗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9. 가맹금 예치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덕자네 방앗간	덕자네방앗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62, 1층101호,102호 (서초동,강남역IPARK)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2.12.10.	하태현	02-599-8959	-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381-71-0050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	-			
가맹사업 관련임원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덕자네방앗간』 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	-----	-------

명 칭	덕자네방앗간	떡볶이 전문점	
상 호	덕자네방앗간 ○○점		
서비스표		출원번호	제 40-2019-0170437 호
		등록번호	제 40-1842331 호
기타 서비스표		출원번호	해당없음
		등록번호	해당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94	-	-
2023년	-	-	-	542,121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개인사업자 등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내용임.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하태현	대표	2022.12.10~현재	[덕자네방앗간] 대표	업무총괄대표
가맹사업 관련임원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

•직원수는 [별첨5] 참조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덕자네방앗간	상호사용	2019.11.06. 출원 2022.03.08. 등록	제 40-2019- 0170437 호 제 40- 1842331 호	정덕인	2032.03.08. (가맹사업존속 시까지사용)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귀하에게 허용된 지식재산권은 존속기간 만료일전에 갱신 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점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년 12월 10일)

2. 『덕자네방앗간』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덕자네방앗간	덕자네방앗간	하태현	가맹사업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62, 1층101호,102호(서초동,강남역IPARK)

3. 『덕자네방앗간』 업 종

영업표지	업종	
떡자네방앗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분 식	떡볶이, 김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떡자네방앗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1	-	1	1	-	1
서울	-	-	-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떡자네방앗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 가맹점 없음

6. 『덕자네방앗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덕자네방앗간』 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없어 해당없음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서울	-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

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덕자네방앗간』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덕자네방앗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덕자네방앗간』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이 없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28]쪽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1층	02-3481-5041

귀하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우리에스크로 접속 -> 가맹금 예치신청 클릭 -> 가맹점사업자 클릭 ->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당사 예치계좌에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물품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일반형 : 가맹점 매장 66㎡기준						
최초가맹금내역		금 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맹 비	입회비	[11,0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 맹 계 약 과 동 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오픈영업지원비		가맹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파견비용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점 오픈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영업표지사용비		상호,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비용		계약서상의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개점 전 교육비		[5,500]	가맹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비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소 계		[16,500]				
영업지역 확장비		100m 확장 시 마다 [2,200]	기본 영업지역 이외 영업지역 추가비용	가 맹 계 약 과 동 시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기본 영업지역 이외 추가 영업지역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합 계	[16,500] + 영업지역 추가비용(100m 확장 시 마다 [2,200])
-----	--

▶상기 영업지역 확장비용은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귀하가 [18]쪽에 기재된 기본 영업지역 만을 원할 경우 영업지역 확장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물품보증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 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물품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	물품대금미납, 손해배상액 등	해지 및 종료시 정산 후 반환
합 계	[2,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초가맹금	가맹비(개점전교육비포함)	[16,500]	포함
	영업지역 확장비용(선택비용)	100m 확장 시 마다 [2,200]	
보증금	물품보증금	[2,000]	없음
합 계	[18,500] + 영업지역 추가비용(100m 확장 시 마다 [2,200])		

4)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점포 규모별로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66m²기준-일반형)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합 계	[96,800]		[4,840]			
인테리어	미지정	[55,000]	[2,750]	공사 개시 1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 내장공사

설비/집기	가맹본사	[33,000]	[1,650]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별첨 2] 참조
초도물품비		[3,300]	[165]	물품공급 3일 이전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간 판	미지정	[5,500]	[275]	주문제작 3일 이전	간판 제작 전 계약취소	외부 전면간판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 ² 당 [220]을 감리비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승압, 외부샷시, 가스공사, 화장실, 냉·난방 설비, 통신설비, 어닝,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니며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떡자네방앗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투자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정보공개서 [27~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금 액(부가세 포함)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특별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당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수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비용 중 가		청구를 받은	가맹본부의 귀	광고활동 실시 후 반

	맹본부부담액50%제외 금액(단, 제품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 7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날로 부터 15일 이내	책사유로 광고 활동이 취소된 경우	환 되지 않음
판촉비	1)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2)개별판촉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 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부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월 매출액의 3.3% 매월 해당 비용 납부 또는 선금 연단위6,600,000원		익월 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지연이자	연 20%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부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당사는 가맹사업의 양도일 전일까지 가맹금 중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덕자네방앗간』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영업표지 사용비,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비의 지급은

해당 양수·도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초가맹금	가맹비(개점전교육비포함)	[16,500]	포함
	영업지역 확장비용(선택비용)	100m 확장 시 마다 [2,200]	
보증금	물품보증금	[2,000]	없음
합 계	[18,500] + 영업지역 추가비용(100m 확장 시 마다 [2,2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덕자네방앗간』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오십만원(₩5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형/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의 물품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덕자네방앗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별첨2)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덕자네방앗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2) 당사가 『**덕자네방앗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3]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 3] 참조		POS를 통한 게시	2023년 12월 기준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 음식점	떡자네방앗간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 권	지 역	설정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특수상권을 제외한 지역	점포를 중심 반경 500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특수상권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복합건물 식당가, 지하철역, 대형병원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비 고	① 상기 기본 영업지역 이외 귀하가 영업지역을 추가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100m 확장 시 마다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원/부가세 포함) 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영업지역을 추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영업지역은 최대 반경 2km를 넘지 못합니다.		

▶철로를 사이에 두고 출구가 있는 지하철 역사가 있을 경우 지하철 역사 각각의 출구로 시작되는 상권은 별도의 상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를 설정하였을 때 해당지역 내에 철로로 구분되는 다른 출구의 상권이 포함될 경우 특수상권인 지하철 역사 및 다른 출구의 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변경(안) 작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성 → 가맹점사업자 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 료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고객 모집을 하기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0%	100%	0%	0%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내용(관련 계약조문 : 제8조 제2항)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6조 제1항)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본사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상 규정된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감독,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설비 및 기기 등에 대한 점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가맹계약서상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국단위 광고 및/또는 판촉에 불참하거나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 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营业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이 본사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본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로열티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을 허위 또는 축소하여 보고한 경우
○ 정해진 기일 내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각종 비용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营业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02-599-8959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비 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점 전 교육비를 제외한 가맹금 면제
대리 행사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
업무 위탁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떡자네방앗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떡볶이 음식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02-599-895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떡자네방앗간』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	------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제한없음	직접 근무	영업이 가능한 인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단위 광고 또는 판촉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 고
-----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체 행사	제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대중매체 광고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제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70%	광고비 3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사전동의(50%이상) → 가맹점 부담액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팸플릿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가맹점사업자당 부담		-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광고활동 내지 판촉활동 금지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소셜커머스 등	제휴행사	기획비용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을 균분하여 부담	가맹점 부담액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완납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약정관련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 당사는 광고/ 판촉 종료 후, 광고/판촉 비용 중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잔여 금액을 균분하여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 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 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2)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오십만원(₩5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폐점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7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60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	D-40	
종업원 구인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D-39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9	

교육 실시	- 출·퇴근 집체교육	D-38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7~35	
지역홍보	- 지역판촉 행사 실시	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tel: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02-599-8959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덕자네방앗간』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개점 전 교육	1.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2. 상품 조리 교육	출·퇴근 집체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에 따른 조리 교육 또는 서비스 품질 강화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보수교육	상품 조리 교육, 점포 운영 및 종업원 관리 교육, 신메뉴 교육, 가맹점 운영 전략 교육 등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덕자네방앗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전 교육	3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교육	개별 산정	실비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신논현역 직영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62, 1층101호,102호 (서초동,강남역IPARK)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1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42,12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599-895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12월 개인사업자등록함.

[별첨 2. 설비, 집기, 초도물품 리스트, 원부재료]

정보공개서본문 이외의 설비목록은 매장현장에 따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시 협의사항

◆ 용역, 설비 및 집기 시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원,부재료품목

[구입강제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권유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별첨 2]의 리스트는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등이 상이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므로 실제 제공되는 설비 및 물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 3.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비고
떡 볶 이	5,000	2023년 12월 기준 (변경시 가격공지함)
비빔 만 두	8,000	
덕 자 김 밥	3,500	
우 영 김 밥	4,500	
참 치 김 밥	4,500	
맹 초 김 밥	5,000	
치 즈 김 밥	4,500	
라 면	5,000	
치 즈 라 면	6,000	
해 장 라 면	6,500	
쫄 면	8,000	
돈 까 스	9,000	
부 산 어 목	3,500	
물 떡	3,000	
튀 김	5,000	
순 대	5,000	
가 래 떡 & 조 청	3,000	
삶 은 계 란	2,000	
음 료 수	2,000	

[별첨 4.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